#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4

발의연월일: 2024. 6. 10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박균택 · 양부남

전진숙 · 정진욱 · 안도걸

조인철 • 박홍배 • 정준호

주철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故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자 합니다.

2022년 5월,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. 故 김홍빈 대장 구조·수색에 들어간 비용 6,800만 원을 물어내라는 것입 니다. 개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,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 습니다.

김 대장은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,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했습니다.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의 끈기와 열정에 시민들은 감탄했고, 용기를 얻었습니다.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. 그는 장애인 스포츠 진흥과 인권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.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기에, 정부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습니다. 훈장까지 수여했는데. 일방

적 구상권 청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.

비록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 는 예외가 필요합니다.

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도 근거 규정 마련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습니다.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.

이에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·사고로서 그 행위로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·포장을 수여받은 경우, 국가가 신체·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. 국가가마땅히 져야 할 의무이고, 시민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재외국민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건·사고로서 그행위로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경우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비부담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 년 4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·사고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경비의 부담 등) ① 재외	제19조(경비의 부담 등) ①
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	
신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	
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	
한다. 다만, 재외국민을 긴급히	
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	
용을 부담할 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재외국민이 국위를 선양하는
	행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로
	<u>서 그 행위로 「상훈법」에</u>
	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
	받은 경우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